

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 .11.

제 출 자 : 이정율의원외2

1. 제안이유

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함은 물론 지원사업
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영세농업인에 대한 우선권
을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
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의 지원사업 대상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업생산성
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(안 제5조)
- 부엌개량, 화장실 개량, 지붕개량 ⇒ 농기계 구입(병해충
방제기, 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
 - 관정개발, 전기시설 설치 ⇒ 농업용 자채구입(과수 지주목,
비료 및 농약)
- 나. 종전의 지원기준 단위당 사업비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인
사업을 대상으로 100분의 60이내 ,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
⇒ 100만원이상 100분의 70이내, 연간 한차례 700만원 이내
(안 제6조)

다. 예산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가면적 2,000m²이하인
농가와 다문화 가정 농가를 우선선정(안 제7조)

라. 이중지원 금지조항 신설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 『별 첨』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집행기관 의견수렴('13.10. 2. ~ '13.10.18) : 일부의견 반영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13.10.21. ~13.11.10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거환경 개선”을 “농업생산성 향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농기계 구입(병해충방제기, 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
2. 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 등)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1항 중 “이상 500만원 이하인”을 “이상”으로, “60”을 “7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0만원”을 “7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,000㎡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이중지원 금지)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<u>주거환경 개선</u>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</p> <p>1. <u>부엌개량, 화장실 개량,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</u></p> <p>2. <u>관정개발,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</u></p> <p>3. <u>비닐하우스 자재, 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</u>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<u>농업생산성 향상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농기계 구입(병해충방제기, 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</u></p> <p>2. <u>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 등)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<p>제6조(지원기준) 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<u>이상 500만원 이하인</u>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<u>60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<u>300만원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6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이상</u> ----- ----- - <u>70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700만원</u> ----- -----.</p>

<p>제7조(신청 및 선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신청 및 선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,000㎡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(이중지원 금지)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--	-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4. 작성자

작성자	의원 이정윤
연락처	(033) 330 - 2508

관 계 법 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